

의안번호	제 393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9월 21일 (제314회)

청원·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12년 9월 21일

청원·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393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2. 9. 21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주 문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, 「동법시행령」 제56조, 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“청원·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한다.
- 활동기간 : 구성일로 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- 위 원 수 : 7명 이내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-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추진이 합의되었으며, 이를 이끄는 통합 추진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관련 행정기구가 설치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
- 통합시청사 위치 선정을 포함한 청원·청주상생발전방안의 추진 등 통합시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
- 정부 인센티브 확대를 포함한 통합지원 입법 등 정치권 지원 촉구와 상생발전 방안의 진행상황 점검 및 촉진을 통해 도의회 차원에서 청원·청주 통합을 지원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 :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동법시행령」 제56조
- 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 및 제9조

관련법규 발췌

【 지방자치법 】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【 지방자치법 시행령 】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【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】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원의 자격심사, 윤리심사,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 다만,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선출과 개선(改選))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출한다.

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